

■ 공직선거관리규칙 [별표 2] (규칙 제72조 관련) <개정 2025. 2. 20.>

### 투표함 규격

1. 투표함의 종류 및 규격

종 류	규 격
소형 투표함	(길이)385mm×(너비)425mm×(높이)723mm
대형 투표함	(길이)515mm×(너비)580mm×(높이)766mm
관내 사전투표함	(길이)535mm×(너비)590mm×(높이)750mm

2.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규격과 달리하여 투표함을 정할 수 있다.

3. 중앙위원회는 투표함의 종류별로 재질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.

주: 투표함에는 해당 투표구의 명칭 및 해당 투표함의 관리번호를 표시한다.